#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74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4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또는 변경 등록·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 하지 아니한 사업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했 개 정 제4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43 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 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 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한 사업자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환 3.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43 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 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해당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 록 · 신고에 적합하도록 변경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하지 아니한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을 변경 인ㆍ허가 또는 변경 등록 · 신고에 적합하도록 변

경하지 아니한 사업자